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22
----------	-----

제출년월일 : 1997. 5.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 이유

-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지방중소기업의 경영개선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정보·자금·판로등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업활동의 중추적 시설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 동 센터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

□ 주요 골자

가. 법인격 및 명칭을 규정함 (안 제2조)

- 법인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 명 칭 :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함 (안 제7조)

-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인력정보등의 제공
-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
-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 기술·경영 연수사업
-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9조)
- 라. 중소기업지원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 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하여 보고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 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할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근거 법령

- 민법 (제32조, 제45조, 제46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
- 통상산업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 제2조)

조례(안) : 따로붙임

관련규정 발췌문 : 따로붙임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지원센터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원센터의 주사무소는 청주시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 관할구역외의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재산) 지원센터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지원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지원센터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지원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인력정보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
6.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의제공사업
7. 기술·경영 연수사업
8. 통상산업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충청북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9. 기타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수익사업) 지원센터는 제7조의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재산출연 등) 충청북도지사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 충청북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회계년도) 지원센터의 회계년도는 충청북도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충청북도지사는 지원센터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 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충청북도지사는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